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9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 백승아·박해철·서미화

민병덕 • 박지혜 • 문진석

김 윤·한창민·용혜인

조계원 · 허 영 · 김성환

정혜경 · 황정아 · 민형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 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. 이에 대해 2016년 국 가인권위원회의 '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', 2013년 유엔 표현의 자 유 특별보고관의 권고, 그리고 국제노동기구(ILO)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.

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 세부터,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,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.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,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.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

맞지 않음.

주요내용

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 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2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801호),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0 0호) 및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02호)의 의결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"을 "공무원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2조(기탁금의 기탁) ①기탁금	제22조(기탁금의 기탁) ①		
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(당원			
이 될 수 없는 <u>공무원과 사립</u>	<u>공무원을</u>		
<u>학교 교원을</u> 포함한다)은 각급			
선거관리위원회(읍•면•동선			
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)에			
기탁하여야 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